

도보



제1053호. 2022. 6. 14.(화)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입법예고

제2022-73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22-74호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22-7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22-76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22-77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
제2022-78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4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정보공개>법무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 시

제주시 고시 제2022-272호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6
제주시 고시 제2022-2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7
제주시 공고 제2022-2003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화북2동 5568 일원)	27

제 주 시

제주시 공고 제2022-2011호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열람공고 28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3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상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2015.12.31.)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어 기금에 관한 사항 등은 이미 조례에 반영되어 해당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전화 및 전송: 064-710-6512 / FAX 064-710-6519

- E-mail: cmhlob@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6. 14. ~ 2022. 7. 4.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4호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위 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2019.4.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전화·전송: (064) 710-2412, Fax (064)710-2419

- E-mail: leejh187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2. 6. 14. ~ 2022. 7. 4.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를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도지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를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로, “공동 차량”을 “공동차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시 부담금의 대상·감면율 등 대부분 조례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중소기업부(중소기업 읍부즈만)의 심의 폐지 권고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되면 부담금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 나.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까지 제출하되, 신규 시설물의 사용승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단서 신설(안 제12조제1항)
 - 다. 부담금 경감신청내역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안 제15조제2항)
 - 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폐지(안 제16조 ~ 제18조)
 - 마.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금 한시적 경감사항 삭제(안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전화·전송: (064) 710-2412, Fax (064)710-2419

- E-mail: leejh187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6. 14. ~ 2022. 7. 4.

○ 개최 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개발사업 :”을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 :”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4항의 경감률은 제2항의 경감률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감 받고자 하는”을 “경감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12조제2항 중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를 “제1항에 따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후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후”로, “결정일로부터”를 “결정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감 받고자 하는”을 “경감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와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11조제1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	참 여 자	이 행 조 건	경감률(%)
1.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2.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이용자	동일지역(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3.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최초 1회만 경감)	20
		최초 1회 경감 이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연도부터 경감	5
		주차정보 제공	5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	20
5.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이용자	공항, 항만, 환승정류장 등 1일 3회 이상 운행 ※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6.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자동차등록번호와 끝자리 숫자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 운휴	10
7. 승용차 5부제 (요일제 포함)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 운휴 ·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휴	20
8. 승용차 2부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 운행	30
9.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종사자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	2 (전체 이용 건수 30 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	3 (전체 이용 건수 30 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10.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임차 및 소유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경감비율의 100분의 50만 적용	20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교통량 감축활동	참 여 자	이 행 조 건	경감률(%)
11. 법정 의무 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12.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시설물 소유자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구입비용(대당 5만원, 15% 범위) * 구입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15
13. 업무용 택시 이용	종사자	도내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 기관에서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5% 범위)	5

비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면	입주업체수			종 사 자 수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FAX		종사자이용 승 용 차	대	

부 담 금 경 감	감축방안이행		최대경감 (%)	신청 (%)	세부사항
	계				
	주차장유료화		20		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셔틀버스 운행		10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승용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시행방법 :
		5부제,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통근버스 운행		20		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10		매월 시행 일수 : 일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업무용택시이용		5		사용금액 : 원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_____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_____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면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축방안이행		최대경감 (%)	신청 (%)	세부사항			
	계							
	주차장유료화		20		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셔틀버스운영		10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승용차부제운행	10부제		10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 시행방법 :		
		5부제,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통근버스운영		20		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법정의무휴업일또는 자율휴무시행		10		매월 시행 일수 : 일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업무용택시이용		5		사용금액 : 원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시설물 대표자 성명 : _____ 신청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_____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m ²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축방안이행			최대경감 (%)	경감신청 (%)	결정사항 (%)	비고	
	계							
	주차장유료화			20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셔틀버스운행			10				
	승용차부제운행	10부제			10			
		5부제,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통근버스운행			20				
	법정의무휴업일또는 자율휴무시행			10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업무용택시이용			5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6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문 신설 및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방회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7조, 안 제8조제2항, 안 제16조제7항, 안 제27조제2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안 제33조)

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 변경(안 별표)

라. 그 밖에 용어 순화가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구 수정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596 Fax (064)710-6639

- E-mail: bona2085@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2. 6. 14. ~ 2022. 7. 4.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를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용도”를 “물품관리관은 용도”로,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라 한다)을”을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라 한다)을”을 “공무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물품관리관의 직무)”를 “(물품관리관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납보관”을 “출납 및 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도에 의한다”를 “연도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를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서 요구한”을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매입가격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생산물: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관리전환된 물품: 인계서의 기재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견적가격
- 제14조 중 “연도말”을 “회계연도 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를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이”를 “일정기간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가능”을 “불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제15조제1항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에”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없는물품”을 “없는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 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으로서”를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하는”을 “드는”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를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참작”을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를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를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 2회(4월, 9월)”를 “연 2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매각처분 할”을 “매각처분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처분”을 “폐기(해체)처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고품·공용품”을 “재고품, 공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용품중”을 “공용품 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정된 경우 물품운영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한 자에게”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관의”를 “보관 중인”으로, “즉시”를 “즉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의”를 “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변상을 명하여야”를 “변상하게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입시키거나”를 “납입하게 하거나”로, “변상시킨다”를 “변상하게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를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중”을 “장부 중”으로, “비치”를 “작성·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외에”를 “외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매년도 따로”를 “연도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구장부”를 “기존의 장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을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도 본청,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나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따라 검사를 하는 때에는”을 “따른”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물품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를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의한”을 “따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 항 중 “날인 하여야”를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29조 중 “경질”을 “변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일로서”를 “전일에”로, “인계년월일”을 “인계연월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그밖의”을 “사망이나 그 밖의”으로,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를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29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구개편으로 인하여”를 “조직개편으로”로, “제29조 내지 제31조의”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로, “인계를 하여야”를 “인계하여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제4조 관련)

1. 물품의 분류

가. 비 품: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

2. 품종구분의 기준

가. 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조립,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7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596 Fax (064)710-6639

- E-mail: bona2085@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2. 6. 14. ~ 2022. 7. 4.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물품관리사무자의 지정)”을 “(물품관리책임자의 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의 규정”을 “별표”로 한다.

- 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출납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등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7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하려면 물품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청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로 한다.

제8조 중 “하고자 할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9조 중 “받고자 할 때에는”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으로, “청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로, “수령인”을 “수령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을 “우표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물품중”을 “물품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의”를 “재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물품출납공무원”을 각각 “물품출납원”으로, 같은 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물품 중”을 “있는 물품 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를 “관리전환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관의결재”를 “물품관리관의 결재”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를 “무상양여하려면”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장부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를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사발생물품중”을 “공사발생물품 중”으로, “매각을 요하는”을 “매각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보고서)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취득년월일”을 “취득연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출금량”을 “출급량”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을 각각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각각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인수란의 “인계자”를 “인수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년월일”을 각각 “연월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비품출납운영카드”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년월일”을 각각 “연월일”로, “출금”을 각각 “출급”으로, “물품출납원”을 각각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기재요령란 중 “물품관리 카드”를 “물품카드”로, “정부물품 분류표”를 “정부물품 분류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인계년월일”을 “인계연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별표]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제2조 관련)

구 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이용관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제주특별 자치도본청	본청	회계과장	계약업무담당팀장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주무팀장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	예산장비업무담당팀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회계업무담당과장 (과가 없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회계업무담당팀장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주무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경리업무담당팀장	각 담당관(공보관) 또는 전문위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 및 상임위원회 서무담당자
합의제행정기관		회계업무담당과장 (팀이 없는 위원회는 사무국장)	회계업무담당팀장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주무팀장
행정시	본청	총무과장	계약업무담당팀장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주무팀장
	보건소	각 보건소장	회계업무담당팀장	-	-
읍·면·동		읍·면·동장	회계업무담당팀장	-	회계업무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8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피한정후견인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규정을 정비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412, FAX 064-710-3419

- e-mail: kohj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6. 14. ~ 2022. 7. 4.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위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규칙에”를 “규칙에서”로, “심사위원회 운영”을 “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의”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위하는”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추천 구비서류)”를 “(추천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 하고자 하는”을 “추천하려는”으로, “구비하여”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부 (복사 처리가 곤란할 시에는 5부)”를 “1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사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의”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 주 시

제주시 고시 제2022-272호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제주시 연동 265번지 상의 탐라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제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제주시 연동 265번지

- 면 적 : 3,338.5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대표 이대형)

- 주소 : 제주시 연동4길 25, 나동 206호(연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22년 6월 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명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건폐율(%)	비고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3,338.5	1,533.7403	14,282.2692	45.941	
	용적률(%)	높이(m)	층수	용도	
	249.3084	44.92	지하3/지상14층	공동주택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규 모	형 별	공 급 면 적(m ²)			비 고
			계	전 용	주거공용	
공동주택 (분양)	지하2~지상15층 1개동 58세대	51	68.8266	51.2314	17.5952	
		64	83.9603	64.5822	19.3781	
		69	91.4197	69.1542	22.2655	
		75	96.9193	75.4043	21.5150	
		113	151.2017	113.7446	37.4571	

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 수					
	계	51	64	69	75	113
계	90	13	13	13	49	2
조합원	75	5	13	6	49	2
일반분양	13	7	-	6	-	-
보류시설	2	1	-	1	-	-
임대	-	-	-	-	-	-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시 고시 제2022-2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3.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허가 내용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점용목적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피허가자	주소	비고
2022-32	2022. 6. 10.	공작물의 신축	원장천	제주시 노형동 3709번지	3㎡	2022. 6. 10. ~ 시설물 존치 시	S○텔레콤(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2022-33	2022. 6. 10.	토지의 점용	조천	제주시 아라이동 2986번지	210㎡	2022. 6. 10. ~ 2022. 6. 30.	금○건설	충남 서산시 동서1로	

제주시 공고 제2022-2003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인허가 관련]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된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제 주 시 장

□ 공공하수도 설치 개요

공공하수도의 명칭	공공하수도(D300mm)		
사업시행의 목적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를 받아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시 화북2동 5568 일원		
사업시행지의 면적(연장)	오수관로(D300mm) L=438m		
공공하수도의 구분	오수관로	하수처리구역	0.0008841km ²
시설용량 및 관거형태	관거형태	오수관로(PVC 이중벽관)	
	시설용량	오수관로(D300mm)	
사용 개시일	2022. 06. 09.		

□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제주시청 상하수도과)

□ 열람서류 : 하수처리구역도(위치도, 준공도면), 기타 관련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3호

2022년 6월 14일(화요일)

제주시 공고 제2022-2011호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제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1-5	제주 시민회관	공공청사	이도일동 1700-1번지 일원	3,129.3	감)3,129.3	-	1977.8.31.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	제주시민회관	공공청사 폐지 (면적: 3,129.3m ²)	제주시민회관을 원도심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하는 사항임

2. 열람기간 : 2022. 6. 13. ~ 2022. 6. 27.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시 도시계획과(☎728-3514) ※ E-mail: damrim@korea.kr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